논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16호 관련 발의연월일 : 2022. 2. 21.

발 의 자 : 최정숙 의원

1. 수정이유

가.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15.9.)」 및 「지방자치법」개정('21.1.13.)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지도하고 있고 본 개정조례안의 위원회 설치방안보다는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각 업종별 민간단체를 활용하여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논산지원센터가 운영 중이며 현재 광범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2. 수정 주요내용

- 소상공인 지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문 삭제(안 제7조 ~ 제15조)

3. 수정안 : 붙임

4. 수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참고사항 : 없음

□ 수정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논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수정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음.

□ 수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설〉	제7조(소상공인 지원 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논산시소상공인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둘수 있다. 1.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설정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경영 및 사업지원에관한 사항 4.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의 지원사업 대상 선정 5. 사업대상지 상인 등에 대한자문 및 컨설팅 6.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여회의에 부치는 사항	_〈삭 제〉
〈 신설〉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u>〈삭 제〉</u>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	
	<u>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u> 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	
	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u>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	
	1. 논산시의회가 추천하는 논산	
	시의회 의원	
	2. 논산시 소상공인 관련단체에	
	서 추천하는 사람	
	3. 소비자 및 경제관련 시민 사	
	<u>회 단체 대표</u>	
	4. 상권 육성 및 활성화와 관련	
	<u>된 기관·단체 및 학계 전문가</u> 5. 유통·마케팅 관련 전문가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	
〈신설〉	제9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u> 〈삭 제〉</u>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	
	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	
	<u>로 한다.</u>	
〈신설〉	제10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u>〈삭 제〉</u>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u>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u> 스 이다	
	<u>수 있다.</u> 1.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	
	<u>• 11 </u>	

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 위를 하였을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4. 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u>〈</u>삭 제〉 〈신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 회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 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 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 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 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 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 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

	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	
	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	
	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	
	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	〈삭 제〉
	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삭 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	
	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의 일시, 장소, 심의내용 등을	
	기재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	
	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	_〈삭 제〉_
	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상공인	
	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소상공인업무 담당이 된다.	
〈신설〉	제15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	_〈삭 제〉_
	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 답	
	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	
	<u>하게 할 수 있다.</u>	